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중 “농촌진흥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사업소장, 농축산사업소장”을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개발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행정관리담당관실란”을 삭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의 분야별란중 “세정과”를 “재정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과”로, “수질관리과”를 “물관리과”로, “공업과”를 “자원관리과”로, “치수과”를 “재해대책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재정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호 내지 제7호”를 “환경위생과 소관 제1호 내지 제5호”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2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4호 내지 제25호”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23호”를 “환경위생과 소관 제6호”로, “위생과 소관 제1호 내지 제5호”를 “환경위생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1호”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5호”를 “사회복지과 소관 제6호 내지 제20호”로, 농산과 소관 제18호 내지 제22호를 삭제하고, “농산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를 “농산지원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로, “농지개량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산지원과 소관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재정과 다음에 경제과, 자원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위생과, 보건과, 물관리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지역개발과, 재해대책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순으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관리과 소관 제1호를 삭제하고, “제8호, 제9호”를 “제2호, 제3호”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관리과	1	- 소음진동배출시설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에서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 가.배출시설설치신고,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 나.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인정 - 다.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 라.가동개시의 신고 수리 - 마.허가 또는 변경허가 부합여부 확인 및 조치명령 - 바.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소음·진동규제법제9조 동법제10조제1호 동법제10조의2 제2항 동법제13조제1항 동법제13조제3항 동법 제21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물관리과 소관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과	3	◦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설 치인가에 관한 권한 및 인가된 사 항의 변경 또는 폐지 권한	하수도법 제6조제1항
	4	◦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의 위법공사에대한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36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원예유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8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원예유통과	1	◦ 양곡매매업의 신고,신고내용변경 및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처리등 신고의 수리	양곡관리법제18조및 동법시행령제19조
	2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매매 업을 영위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양곡관리법제36조,제1 항제1호
	3	◦ 양곡가공업의 등록	동법제19조제1항 및 동 법시행령제21조
	4	◦ 양곡가공업의 시설의양도,임대,변경 신고,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 의 수리	동법제19조제3항 및 동 법시행령제22조
	5	◦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동법제21조제1항
	6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 을 영위한자 등에 대한 벌과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제36조
	7	◦ 갑종가공업의 양도,임대신고 등의 수리	동법제19조제3항및동법 시행령제22조
	8	◦ 양곡가공업 시설의 변경사항 확인	동법시행령제22조,동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호 내지 제35호를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 산 과	13	◦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수의사법 제33조
	29	◦ 수산시설 관리 감독자의 의무	수산시설관리규정제5조
	30	◦ 시설유형별 관리감독 및 처분 승인권	동 규정 제6조
	31	◦ 처분의 제한	동 규정 제7조
	32	◦ 관리부의 비치	동 규정 제9조
	33	◦ 관리상황의 조사	동 규정 제10조
	34	◦ 관리조치 및 보고	동 규정 제11조
	35	◦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등	동 규정 제12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산림과 소관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립 과	8	◦ 조수보호원 등의 임명,해임에 대한 다음사항 가.조수보호원 등의 임명 또는 위촉 나.조수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다.조수보호원증 및 명예조수보호원증 발급 및 대장정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제5조,제5조의2, 동 법시행규칙제9조 동법 제5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12조
	9	◦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등 신고 수리	동법 제25조, 동법시행 규칙제52조

별표3의 권한위임사무의 분야별란중 “방호과”를 “방호구조과”로 한다.

별표4의 권한위임사무의 위임대상기관란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산림환경사업소장”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농축산사업소장”을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